국세청 nts.go.kr

납 세 증 명 서

발급번호	7672-427-3806-	처리기간	즉시(단, 해외이주용 10일)
납세자 인적사항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 김	주민등록번호	
	주소(본점)		

증명서의 사용목적	[ ] 대금수령 [ ] 해외이주 (이주번호 제 호, 이주확인일 년 월 일) [✔] 기 타

증명서의 유효기간	유효기간	2020 년 8 월 20 일
	유효기간을 정한 사유	[✔]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7조1항 [ ] 기 타 (사유:)

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(단위 : 원)	유예종류	유 예 기 간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 산 금
		해	당	없	음		

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(단위 : 원)	위탁자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 산 금
	해	당	없	음		

「국세징수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,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
접수번호	501968023527
담당부서	민원봉사실
담 당 자	
연 락 처	031-538-7223

2020 년 7 월 21 일

포 천 세 무 서 장

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* 본 증명의 위·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「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홈택스 > 민원증명(증명발급) > 민원증명 원본확인」에서 발급번호로 확인,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(공문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)

* 본 증명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.